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4쪽 중 제1쪽) 법 이 명 사 업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연 도 사업자등록번호 구 3 (4) 건 적합 여부 적정 여부 ① 요 ② 검 토 내 용 분 사 업 기준경비율 코드 업태별 수입금액 (17)(04)(07) (01)(26))업 사 o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 적 합 (02)(05)(80)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 (Y) )업 요 하지 않는 사업 (03)(06)(09)부적합 거 그 밖의 사업 (N) 계 ㅇ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(18)가. 매 출 액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규 적 합 - 당 회사(10) 억원) (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 모 (Y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요 적 억원) 이하 부적합 중 건 (Y) (N) ② 졸업제도 나. 자산총액(12) ( 억원)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(19)기 (103) 편입 •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적 합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 o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 (Y) 을 직 •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 성 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닐 것 부적합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건 업 부 (N) 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 (N) 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내일 것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(20)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유 적 합 예 (Y)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○ 사유발생 연도(13) ( 년) 기 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부적합 간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(N)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 (27)(21)⑩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요건(⑩)을 충족하는지 여부 (Y), (N) 소 적 ⑩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ㅇ 매 출 액 기 (Y) 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- 당 회사(14) ( 억원) (22)업 (Y), (N)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부

억원) 이하

(

(N)

(4쪽 중 제2쪽)

						(4쪽 중	
구 분	① 요 건		② 검 토	내 용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, (N)	
	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				(24) (Y), (N)	
	(N)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 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 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 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	(28) 적 (Y) 부 (N)
	⑩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 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	
	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법 제5조제1항): 1 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법 제 10조제1항제3호나목3)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원억 미만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25) (Y), (N)	
		( 억원)	( 억원)	( 억원)	( 억원)		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51호서식] <개정 2017. 3. 10.> * 제3점의 집생명명을 입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>회계사 명판 날인</b>							
	업 도	중소기업	<u>필요</u> 업 등 기준검토표	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	(49 8	제1쪽)	
최	E	결산년도 기준	② 검 토 내 용	(3) 적합 여부	(4) 적정 여부		
	(8) 사업 요 건	발수 	( )엄 (02) (00) (	사 업 수입금에 (07) (08)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	
중	® 규 모 요 건	o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'평균 매출액등'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( 억원) 나. 자산총액(12) ( 억원)	규모기준(11)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적 (Y)	
기업	(8) 독립성요건	o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 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<ul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편입・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</li> <li>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직・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날 것</li> <li>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3 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3 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나</li> </ul>	회사 또는 같은 법 당하지 아니할 것 당하지 아니할 것 당하지 아니할 것 성등의 30퍼센트이상 출자자인 기업이 아 호에 따른 관계기업 조의4에 따라 산정 및 제2조제1항제1호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부 (N)	
	138 유 에 기 간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		(20) 적 합 (Y) 부적합 (N)		
소 기 업	190 7	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자신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 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- 당 회사(14) ( 억원)	영위하고, 독립성 <mark>수 사항</mark> 규모기준(15)	(Y), (N) (S2) (Y), (N)	(27) 적 (Y) 부 (N)	

						(4쪽 중	제2쪽)
구분	① 요 건		② 검 토	. 내 용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⑤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업	(23) (Y) (N)				
		<ul> <li>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</li> </ul>					
	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제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신총액 이 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・간접적으로 소유 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 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(2/) (Y) (N)	(28) 적 (Y) 부
	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 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	(N)
	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약공제(법 제5조제1항: 1 천5박역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합)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2 a) (Y , (N)	
	<ol> <li>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법 제 10조제1항제3호나목3)): 5천억원 미만</li> <li>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원억 미만</li> </ol>	( 억원)	( 억원)	( 억원)	( 억원)		

\*회계사 또는 세무사 명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\*\*소기업유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 소기업부분 붉은색 표기 된 부분이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
\*\*\*붉은색 표기가 된 부분은 필수 사항입니다.